

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2년 10월 30일

○ 회부일자 : 2002년 10월 31일

3. 제안이유

- 상위법령의 개정 및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 사항을 개선·보완하고,
- 문화재 용역사업·수리공사 평가를 위한 문화재기술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건설공사시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검토 사항을 정하여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4. 주요골자

- 문화재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문화재 위원수를 20명 이내에서 25명 이내로 함. (제6조제1항)
- 행정부지사가 문화재위원회 당연직 위원장인 것을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함. (제7조제2항)
- 문화재 용역사업 또는 수리공사의 평가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문화재기술위원회를 설치 운영함. (제25조의2)

- 문화재 주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당해 문화재 외곽 경계로부터 일정 지역(국가지정문화재는 500m, 도지정문화재는 300m 이내)안에서 허가 등을 하기 전에 당해 건설공사가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받도록 함.

(제27조의 2)

5. 검토의견

- 충청북도 문화재보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이는
- 도내 문화재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문화재 기술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문화재 주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가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받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며,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인 문화재위원수 조정 및 위원장직 선출방법 등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